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2년 1월 8일

나. 회부일자 : 1992년 1월 9일

3. 제안이유

국가유공자단체는 비영리사업자로 지방세 비과세대상이나 1991. 12. 14개정 공포된 지방세법(법률 제4415호)에 의하여 수익사업용부동산은 지방세를과세토록 개정되므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측면에서 도세과세면제조례를 제정하여 과세면제코자 하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- 면제대상 : 국가유공자단체가 임대, 기타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
- 면제세목 : 취득세, 등록세, 공동시설세

5. 검토의견

-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사업자가 취득,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토록 되어 있으나, 다만 수익사업용 부동산은 과세토록 규정되어 있음.
- 그러나 국가유공자단체는 부동산의 임대 및 기타수익사업에 의하여 단체운영자금을 마련하는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의 지원측면에서 계속 면제조치가 필요하므로 충청북도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